

A scenic view of a river flowing through a forest. The trees on the banks have vibrant autumn foliage in shades of yellow, orange, and red. The calm water of the river reflects the colorful trees and the sky. The overall atmosphere is peaceful and natural.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방안

2007. 9

목 차

1 > 지역분류의 필요성

2 > 지표개발

3 > 지역분류의 방법

4 > 지역분류의 결과



지역분류의 필요성

지역분류의 필요성

◆ 지역여건을 감안한 차등지원정책의 토대 필요

- 지역여건을 감안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토대 미약
 - 현재 신활력사업, 개축지구 등의 사업에서 단편적인 지역분류
- 종전의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의 성장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수준에는 미흡

※ 외국의 경우 지역간 차등지원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도적 바탕 위에서 추진

⇒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차원의 지역분류 필요

지표개발

◆ 지표개발의 준거설정

- 지역분류의 준거 : 지역의 발전정도
- 지역의 발전정도의 정의
" 경제기반이 양호하고 재정이 풍부하여, 인구가 성장하고 복지가 양호한 정도"



지표개발

◆ 지표선정 의의

부 문	지 표	선 정 의 의
인구	- 인구변화율	- 경제, 사회, 정치적 기회의 압축
	- 인구밀도	- 인구이동 추세 반영
	- 고령인구비율	- 인구이동의 결과 반영
산업·경제	- 1 인당 소득세할주민세	- 소득의 대리변수 (proxy variable)
	-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 내재화 된 산업경제 활성화 정도
	- 1,000 인당 총사업체 종사자수	- 산업활동 활성화 정도 반영
	- 총사업체종사자수 증가율	- 산업활동 활성화 정도의 추세반영
재정	- 재정력지수	- 재정건전도 반영
	- 1 인당 지방세징수액	- 재정부문의 수입, 투자여건 반영
	- 지방세징수액 증가율	- 재정부문의 수입, 투자여건 추세 반영
복지	- 1,000 인당 의료병상수	- 의료부문의 삶의 질적 발전 반영
	- 1,000 인당 공공도서관 좌석수	- 교육부문의 삶의 질적 발전 반영
인프라	- 도로율	- 접근성 등 인프라 부문의 발전 반영
	- 상하수도 보급률	- 산업, 생활 등 제반활동 용수 반영

지 품 개 박

해외 지역분류

국 가	분류기준	유 형	차등지원
E U	○ 지역발전수준 · 1인당 GDP · 실업률 · 지역경쟁력 ○ 입지특성 · 국경접경지역	3개 대분류 및 7개 세분류 ① 균형촉진지역 · 낙후지역 · 일시적 낙후지역 · 준낙후지역 · 일시적 준낙후지역 ② 경쟁력/고용촉진지역 · 순수 경쟁력/고용 촉진지역 · 일시적 경쟁력/고용촉진 지역 ③ 국경지역간협력지역	· 분류지역별로 우선지원분야 선정하여 지원 · ① 지역에 EU지역개발예산 82%, ② 지역에 15% ③ 지역에 3%를 지원
프랑스	<AFR(지역활성화)> · 1인당 소득 · 인구밀도 · 노동력실업률 등	① 낙후지역 ② 준낙후지역 ③ 일시적 낙후지역	① 지역 : 투자금의 최대 80%까지 보조 ② 지역 : 투자금의 최대 40%까지 보조 ③ 지역 : 투자금의 최대 15%까지 보조
	<ZRR(농촌재활)> · 인구밀도 · 경제활동참여인구 · 농업종사자인구비율	ZRR(농촌재활지역)에 속하는 코뮌 리스트를 매년 선정하고, 리스트를 1년마다 조정	· 기업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14년간 전체/부분면제 · 노동자는 사회보장부담금 경감
	· 1인당 소득 · 실업률	① Tier 1 : 1인당 소득이 EU평균의 75%	④ 지역 :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

지역분류의 방법

◆ 종합지수에 의한 지역분류

- 개별 지표값을 Z-Score에 의해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부문별 지표값을 합산하

지역분류의 방법

◆ 지역분류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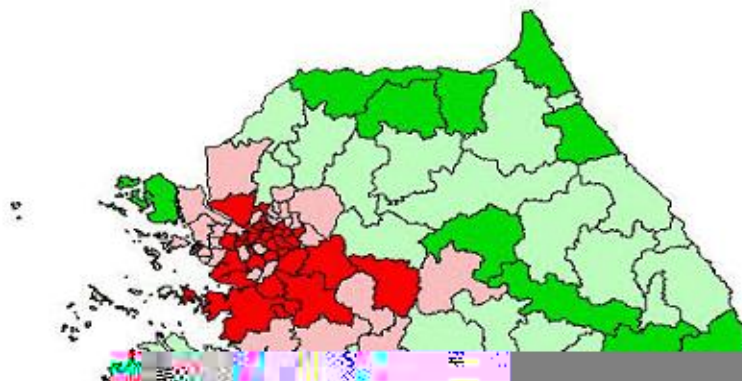
계량분석에 의한 지역분류

구분	지역 I (낙후지역, 60)	지역 II (정체지역, 67)	지역 III (성장지역, 71)	지역 IV (발전지역, 36)
수도권 (66)	강화군 (1)	옹진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7)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서울) 관악구 중구(인천) 남구(인천)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인천) 의정부시 광명시 평택시 구리시 남양주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27)	종로구 중구(서울)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동구(인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31)
충청권 (33)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10)	동구(대전)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 태안군 당진군 (14)	중구(대전) 서구(대전) 대덕구 청주시 음성군 천안시 아산시 (7)	유성구 계룡시 (2)
강원권 (18)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강원) 양양군 (7)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10)	원주시 (1)	(0)

계량분석에 의한 지역분류 (계속)

구분	지역 I (낙후지역, 60)	지역 II (정체지역, 67)	지역 III (성장지역, 71)	지역 IV (발전지역, 36)
호남권 (41)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21)	남구(광주) 북구(광주)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영광군 장성군 (14)	동구(광주) 서구(광주) 광산군 전주시 목포시 광양시 (6)	(0)
영남권 (72)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의령군 고성군(경남)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21)	영도구 북구(부산) 금정구 기장군 동구(대구) 달성군 중구(울산)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곡군 칠곡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20)	서구(부산) 동구(부산)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부산)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서구(대구) 남구(대구) 북구(대구) 수성구 달서구 남구(울산) 북구(울산) 울주군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28)	중구(부산) 강서구(부산) 중구(대구) (3)
제주권 (4)	(0)	북제주군 남제주군 (2)	제주시 서귀포시 (2)	(0)

계량분석에 의한 지역분류 Mapping





◆ 정책적 고려요소

- 정책 활용성 및 광역내 기초자치단체 등급분포 고려
 - 특별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동일 등급의 지역으로 조정
- 균형발전 감안 수도권과 지방은 1단계 차등
 - 높은 발전도, 과밀 등을 고려하고 균형발전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정책요소를 고려한 적용안



정책요소를 고려한 적용안 (계속)

구분	지역 I (낙후지역, 59)	지역 II (정체지역, 55)	지역 III (성장지역, 62)	지역 IV (발전지역, 58)
호남권 (41)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수성군 임실군 장흥군 고창군 부안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21)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12)	광주광역시(5) 전주시 목포시 광양시 (8)	(0)
영남권 (72)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의창군 영덕군 영양군 영천군 고령군 경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의령군 고성군(경남)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21)	기장군 달성군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칠곡군 진주시 동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15)	부산광역시(15) 대구광역시(7) 울산광역시(4) 울주군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36)	(0)
제주권 (4)	(0)	제주특별자치도(4)	(0)	(0)

정책요소를 고려한 지역분류 Mapping



토론과제

지표 및 가중치의 적정성

- 질적지표 감안하기 어려운 지역발전지표의 구성
- 복지 및 인프라 등 질적요소의 추가여부
- 1인당 GRDP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정밀한 지표의 개발
- 부문간 동일 비중의 단순가중치 부여방식 적용

지역분류의 개수

- 국가마다 지역분류의 개수 상이
- 3개 및 4개 그룹의 지역분류의 장점과 단점

차등화 지원의 정당성

- 지역분류와 차등화 지원의 연계
- 차등화 지원의 내용과 범위, 방법
- 차등화 지원의 실효성 및 실효성 강화방안

참고 : 지방 순회설명회시 지역의견

- 전주 등 **6개** 권역별 지방설명회 개최 (07.9.4 ~ 9.14)
 - 기업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지방의 발전된 도시(예 지역 Ⅲ)라도 낮은 등급으로 분류
 - 234개 지자체 단위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권역 단위로 분류
 - 산업.경제에 가중치를 더 부여
 - 복지분야 포함시 지자체가 낮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복지분야에 투자를 줄일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 바람직
 -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두 단계 상향 조정 요청

